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35 NDC 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7개 전문분야를 탄소중립·건강·생태 등 4개 분야로 개편하고, 이에 따라 심사전문인력 보유 기준 및 인증심사단 구성 기준을 정비하며, 전문분야별 고득점 건축물에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려는 것임.

아울러, 녹색건축 인증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증명판 및 인증서 디자인을 개선하고,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인증 심의 생략 대상을 확대하며,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·군사시설도 신청에 따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단서 중 “제외한다”를 “제외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한다) 중 5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”을 “한다)별”로, “1명”을 “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총 5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리모델링한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

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별로 1명을 포함한 총 5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해당 전문분야별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상인 경우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”을 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활성화 시책에 포함된 전문교육”으로, “설계에”를 “설계 및 시공에”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[별표 1]

전문분야(제4조제2항제2호 관련)

전문분야	해당 세부분야
탄소중립과 자원활용	건축계획·설계, 건축구조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전기설비, 건축품질관리, 건축환경, 공조냉동 및 설비, 대기환경, 실내건축, 폐기물 처리 등
생활공간과 건강	건축계획·설계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전기설비, 건축품질관리, 건축환경, 공조냉동 및 설비, 실내건축 등
생태공간과 그린 인프라	건축계획·설계, 건축기계설비, 건축설비, 건축시공, 건축 품질관리, 건축환경, 도시계획·교통, 상하수도공학, 수공학, 수질환경, 실내건축, 조경계획, 조경시공관리 등
친환경 계획과 관리	건축계획·설계, 건축기계설비, 건축시공, 건축품질관리, 도시계획·교통, 실내건축 등

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[별표 2]

인증 명판(제9조제1항 관련)

1. 최우수(그린1등급) 녹색건축 인증 명판 표시 이미지

[한글판]

[영문판]



2. 우수(그린2등급) 녹색건축 인증 명판 표시 이미지

[한글판]

[영문판]



3. 우량(그린3등급) 녹색건축 인증 명판 표시 이미지

[한글판]

[영문판]



4. 일반(그린4등급) 녹색건축 인증 명판 표시 이미지
[한글판]

[영문판]



5. 인증명판 표시 규격

- 가. 필수 표시사항: 인증마크(등급표시), 건축물명, 인증번호, 유효기간
- 나. 인증명판의 크기, 재질, 글씨체 및 표시사항의 배치 등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가목에 따른 인증명판표시 사항은 준수해야 하며, 인증마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- 다. 건축주 등의 요청에 따라 한글판 혹은 영문판 중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.
- 라. 등급별 인증마크 규격(비율, 색상 등)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[별지 제4호서식]

녹색건축 인증서

위 건축물은 녹색건축(등급)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6조,
「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」
제9조제1항(또는 제9조의2제3항)에 따라
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


건축물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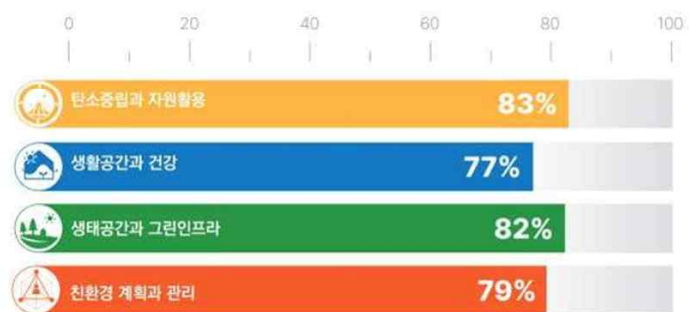


특성화 등급 []

녹색건축 인증서

인증번호

건축주
설계자
시공자
감리자
주소
건축물 용도
연면적 / 층수
준공일
인증기준
유효기간



인증기관의 장

직인



210mm×297mm[백상지 (150g/m²)]

Certificate number

Sustainability Goal	Percentage of Respondents
Carbon Neutral and Resource Stewardship	83%
Living Space and Health	77%
Ecological and Sustainable Infrastructure	82%
Comprehensive Planning and Management	79%

G-SEED

– 8 –

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[별지 제6호서식]

녹색건축 예비인증서

위 건축물은 녹색건축(등급)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6조,
「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3항에 따라
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


건축물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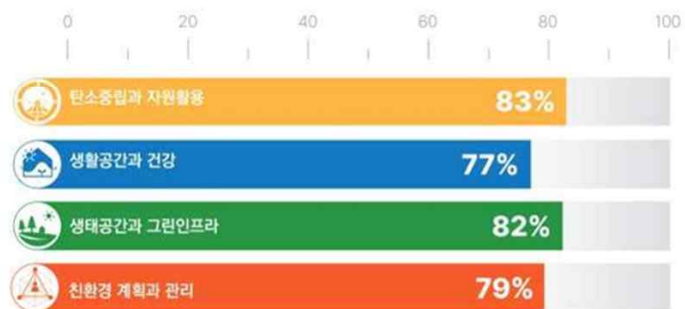


특성화 등급 []

녹색건축 예비인증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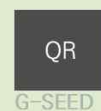
인증번호

건축주
설계자
주소
건축물 용도
연면적 / 층수
인증기준
유효기간



인증기관의 장

직인



210mm×297mm[백상지 (150g/m²)]

Certificate number

Category	Score
Carbon Neutral and Resource Stewardship	83%
Living Space and Health	77%
Ecological and Sustainable Infrastructure	82%
Comprehensive Planning and Management	79%

G-SEED

– 10 –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적용대상)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·군사시설은 <u>제외한다</u> .	제2조(적용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외할 수 있다</u> .
제4조(인증기관의 지정) ① (생략)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1. (생략) 2. 별표 1의 전문분야(이하 “해당 전문분야”라 <u>한다</u>) 중 5개 <u>이상의 분야</u> 에서 각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1명</u> 이상의 사람을 상근(常勤) 심사전문인력으로 보유할 것 가. ~ 바. (생략)	제4조(인증기관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한다</u>)별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 총 5명</u> ----- -----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
3.·4. (생략)

③ ~ ⑥ (생략)

제7조(인증 심사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(이하 “그린리모델링”이라 한다) 인증 용도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

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 중 5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. 다만,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

3.·4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인증 심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.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리모델링한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

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별로 1명을 포함한 총 5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.

을 구성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8조(인증기준 등) ① (생략)

②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최우수(그린1등급), 우수(그린2등급), 우량(그린3등급) 또는 일반(그린4등급)으로 한다.

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경우 또는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등 녹색건축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인증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하며, 해당 전문분야별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상인 경우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.

③ -----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활성화 시책에 포함된 전문교육-----

----- 설계 및 시공에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